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7년 11월 26일

○ 회부일자 : 2007년 11월 27일

□ 제안 이유

○ 급식관련 안전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학부모위원의 당연퇴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의 당연퇴임 사유(학생이 전학·퇴학·졸업인 경우)에 휴학을 추가함(안 제7조)

나.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던 규정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함(안 제13조제5항)

다.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안 제17조제1항)

##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 학교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 급식과 관련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